

< 2025년 하반기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의 주요 내용 >

연번	사업장명	발생일시	발생장소	재해자수	재해내용	위반조항	재해원인(판결내용)
1	(주)시너지건설	'22.3.16.	인천 중구	사망 1명	거푸집 동바리의 높이 조정 작업 중 거푸집이 전도되면서 튀어나온 거푸집 동바리에 맞아 사망함 * 거푸집 동바리: 거푸집을 지지하는 철제 파이프 구조물	시행령 제4조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7호, 제8호	크레인 등 인양장비에 거푸집을 매달지 않았고, 사전에 거푸집 조립도를 작성하지도 않았음. 관리감독자를 미배치한 채 작업자들이 임의로 작업을 수행하도록 방치하였고, 중량물인 거푸집의 취급 작업에 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음
2	바론건설(주) -안성아양지구 폴리프라자 신축공사	'23.8.9.	경기 안성시	사망 2명 부상 5명	9층 바닥의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진행하던 중에 9층 바닥을 지지하던 동바리가 변형·파손되어 9층 바닥이 무너지면서 8층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2명 사망, 9층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5명 부상	시행령 제4조 제1호, 제3호, 제9호, 제5조 제2항 제1호, 제3호	설계가 변경되었음에도 해당 동바리 설치에 있어 구조검토를 하지 않고 조립도 없이 임의로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였음. 파이프서포트 동바리의 설치상태 확인 등 건설공사 시방서에 따라 시공했는지 확인하지 않았음. 콘크리트 타설 시 편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골고루 분산하여 타설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해 지도·감독하지 않음

연번	사업장명	발생일시	발생장소	재해자수	재해내용	위반조항	재해원인(판결내용)
3	(주)영남염직	'23.7.5.	대구 서구	사망 1명	정련기의 회전통 안에 상체를 넣어 원단을 꺼내던 중 다른 근로자가 회전통 안전장치를 해체하고 회전통을 회전시켜 외통과 회전통 사이에 끼여 사망함 * 정련기:섬유제품의 불순물을 없애고 섬유 원단을 축소 가공하는 기계	시행령 제4조 제3호, 제5호, 제7호, 제8호, 제5조 제2항 제1호	담당 근로자들에게 정련기 작업 시 안전수칙 등 안전한 작업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원형 배출구 뚜껑이 열린 상태에서 회전통의 회전을 방지하는 방호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이를 그대로 방치하였음. 일정한 신호방법과 신호할 사람을 정하여 회전통을 회전시키기 전 신호하도록 조치하지 않음
4	(주)우성케미칼	'23.10.4.	경북 영천시	사망 1명	고속 혼합기 청소작업 중 혼합기 본체와 덮개 사이에 끼여 사망함	시행령 제4조 제3호, 제5호 법 제4조 제1항 제2호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제2호	벨브·콕 등의 조작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작업계획서 없이 근로자 혼자 혼합기 내부 청소작업을 하게 함
5	(주)한원건설그룹 -육군제1군단 부대시설공사	'22.11.17.	서울 은평구	사망 1명	오수관로 설치 작업 중 굴착면이 붕괴되면서 토사에 매몰되어 사망함	시행령 제4조 제5호, 제7호	착 방법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굴착 시 굴착면의 기울기를 충분히 유지하지 않았으며, 흙막이시설 또한 설치하지 않음

연번	사업장명	발생일시	발생장소	재해자수	재해내용	위반조항	재해원인(판결내용)
6	(주)엘디에스산업개발 -성림첨단산업 현풍공장 신축공사	'22.3.29.	대구 달성군	사망 1명	철골 옆 외부 계단참에 작업 준비물을 놓아두고 고소작업대로 넘어오던 중 11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함	시행령 제4조 제1호, 제3호, 제5호, 제9호	고소작업대 사용에 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 수 있는 안전대걸이 등을 설치하지 않았음. 또한 고소작업대에 탑승한 근로자가 고소작업대를 벗어나 이동하여 작업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지 않고, 고소작업대의 출입문이 닫히지 않도록 철사로 고정시킨 상태에서 고소작업대를 사용하게 함
7	(주)영진	'23.5.14.	경북 영천시	사망 1명	지게차에서 하차하여 지게차와 화물트럭 사이에서 화물트럭 적재함을 확인하던 중 갑작스럽게 앞으로 이동한 지게차와 화물트럭 적재함 사이에 끼여 사망함	시행령 제4조 제3호, 제5호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지게차를 이용한 상차 작업에 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지 않았음. 또한 지게차 운전자가 운전석에서 이탈할 때 지게차의 운전을 정지시키거나 브레이크를 확실히 거는 등 갑작스러운 주행이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와 지게차 운전대에서 시동키를 분리시키는 조치 등을 하도록 하지 않음
8	(주)한영피엔에스	'23.1.9.	광주 광산구	사망 1명	선반에서 파렛트 교체 작업을 하던 중 지게차와 부딪히면서 선반과 지게차 사이에 끼여 사망함	시행령 제4조 제3호, 제4호, 제7호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3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지게차를 운행하게 하면서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배치하지 않았음. 면허 없는 자가 운전하게 함

연번	사업장명	발생일시	발생장소	재해자수	재해내용	위반조항	재해원인(판결내용)
9	건륭건설(주) -지축로로프라자 2 신축공사	'22.3.9.	경기 고양시	사망 1명	이동식 크레인을 이용한 U자형 철근 인양 작업 중 U자형 철근이 슬링벨트에서 풀리면서 U자형 철근에 부딪혀 사망함 * 슬링벨트: 크레인과 인양물을 연결하는 섬유벨트	시행령 제4조 제3호, 제5호, 제9호	중량물 취급 작업에 따른 작업계획서 작성 및 작업지휘자 지정을 하지 않았음. 인양 중인 철근이 작업자의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조치하지 않았고, U자형 철근묶음을 한줄 걸이로 묶어 인양함
10	(주)강남	'23.1.28.	부산 사하구	사망 1명	약 10m 높이에서 고소작업대의 출입문이 열린 채 도장작업 중 떨어져 사망함	시행령 제4조 제3호, 제9호	주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등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지 않았고, 작업지휘자로 하여금 작업계획서에 따라 현장에서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지 않았으며, 고소작업대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지 않음
11	지구건설(주)	'22.11.2.	부산 기장군	사망 1명	카고크레인에 작업대를 부착하기 위하여 적재함에 오르다가 적재함 후방에 불안정한 상태로 임시 거치된 작업대와 함께 약 2m 아래의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함	시행령 제4조 제3호, 제5호, 제7호	중량물의 취급 작업을 할 때 낙하 등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음

연번	사업장명	발생일시	발생장소	재해자수	재해내용	위반조항	재해원인(판결내용)
12	(주)티엔지건설 -구미시 하이테크밸리 5블럭 공장 신축공사	'23.2.22.	경북 구미시	사망 1명 부상 1명	고소작업대에 탑승하여 X형 가새 설치 작업을 하던 중 고소작업대가 전도되면서 약 14.4m 높이의 고소작업대에서 떨어져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함	시행령 제4조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8호, 제9호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추락·낙하·전도 등의 위험 예방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이 이루어지는지를 관리하지 않았음. 고소작업대와 바닥의 수평이 유지되지 않는 곳에 고소작업대를 설치하면서도 갑작스러운 이동을 방지하기 위한 아웃트리거를 제대로 작동시키지 않음
13	제일산업	'24.4.14.	경기 화성시	사망 1명	큐빙기 본체 하단으로 진입하여 비정상적으로 투입된 벽돌을 제거하던 중 큐빙기 본체와 컨베이어 사이에 끼여 사망함 * 큐빙기: 벽돌을 자동으로 적재하는 산업용 로봇	시행령 제4조 제1호, 제3호, 제4호	큐빙기의 운전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상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높이 1.8m 이상의 울타리를 설치하지 않았고, 컨베이어 시스템의 설치 등으로 울타리를 설치할 수 없는 일부 구간에 대해서 안전매트 또는 광전자식 방호장치 등 감음형 방호장치를 설치하지 않았음. 또한 큐빙기의 수리, 검사, 조정, 청소 등에 대한 확인작업을 하면서도 큐빙기의 운전을 정지하지 않았고 동시에 큐빙기의 기동스위치에 작업 중이란 내용의 표지판을 부착하는 등의 재해예방조치를 하지 않음

연번	사업장명	발생일시	발생장소	재해자수	재해내용	위반조항	재해원인(판결내용)
14	태인산업(주)	'24.2.4.	전북 정읍시	사망 1명	파쇄기 입구에서 파쇄기 수리작업의 일환인 찌꺼기 제거 작업 중 갑자기 가동된 파쇄기에 끼여 사망함	시행령 제4조 제1호, 제3호, 제5호	파쇄기 수리작업 중 파쇄기가 가동되지 않도록 파쇄기 메인 전원을 차단하거나, 파쇄기 메인 전원 또는 작동 버튼에 잠금장치를 하고 그 열쇠를 별도로 관리하거나 파쇄기 메인 전원 또는 작동 버튼에 작동 금지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의 방호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작업현장에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지 않음
15	(주)가야안전공사	'24.4.2.	울산 북구	사망 1명	화물차 적재함 밑에서 화물 적재를 보조하던 중 화물차 적재함에서 쓰러진 화물에 부딪혀 사망함	시행령 제4조 제1호, 제3호, 제5	화물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음. 화물의 소분·결속·적재 방법 등 화물의 추락·낙하·전도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음. 작업의 순서 및 방법을 정하고 작업을 지휘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지 않음
16	(주)진형건설 <도급인>, 신도종합건설(주) <수급인> -황강 취약시설물 보강공사	'24.4.18.	경남 합천군	사망 1명	타설된 콘크리트에 진동을 가하는 작업을 하던 중에 파단된 콘크리트 펌프카 붐대에 부딪혀 사망함	<도급인> 시행령 제4조 제3호, 제5호, 제9호 <수급인> 시행령 제4조 제3호, 제5호	차량계 건설기계인 콘크리트 펌프카 사용에 관한 작업 계획이나 그에 따른 작업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음. 또한 콘크리트 펌프카 붐대 아래에 출입금지 구역을 설정하지 않았고, 노후화된 콘크리트 펌프카의 붐대를 사전에 점검하지 않음

연번	사업장명	발생일시	발생장소	재해자수	재해내용	위반조항	재해원인(판결내용)
17	삼강에스앤씨(주)	'22.2.19.	경남 고성군	사망 1명	선박 화물창 내 핸드레일 보수작업 준비 중 떨어져 사망함	시행령 제4조 제5호, 제7호, 제9호	추락방호망 내지 근로자들이 통로를 이동하거나 보수작업을 하는 동안에, 착용한 안전대 고리를 상시 걸착할 수 있는 라이프라인 등의 설비를 설치하지 않았음. 또한 견고한 안전대 걸착 시설에 상시 걸착할 것을 교육·지시하거나 관리·감독하지 않음
18	(주)베델로지스틱스	'24.2.1.	인천 중구	사망 1명	지게차를 이용한 화물 적재 작업 중에 지게차에서 내려서 바닥에 고임목을 놓는 등의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움직이는 지게차와 창고 벽 사이에 끼여 사망함	시행령 제4조 제3호, 제4호, 제7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지게차를 이용하여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함에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지게차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함에도 지게차 포크를 가장 낮은 위치 또는 지면에 내려두도록 하거나 원동기를 정지시키는 등 갑작스러운 주행이나 이탈 방지를 위한 조치를 준수하도록 하지 않았으며,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지게차의 제품 설명서에 정한 기준에 따라 주차브레이크의 정상 작동여부를 점검하지도 않음
19	(주)브로텍	'24.6.11.	경기 화성시	사망 1명	압축기 안전문 안으로 들어가, 작동 중인 압축기의 냉각호스 등을 점검하던 중 좌·우측 금형부 사이에 끼여 사망함	시행령 제4조 제3호, 제4호, 제5호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제2호	압축기의 정비작업을 할 때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지 않았고, 압축기 안전문에 설치된 방호장치를 해제하거나 사용을 정지하지 않도록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음

연번	사업장명	발생일시	발생장소	재해자수	재해내용	위반조항	재해원인(판결내용)
20	한국콘크리트(주) <도급인>, (주)명진그린테크 <수급인> -한국콘크리트(주) 괴산공장	'23.4.11.	충북 괴산군	사망 1명	PC거더 보수 작업 중 뒤편의 PC거더가 전도되면서 2개의 PC거더 사이에 끼여 사망함 * PC거더: 콘크리트제품으로 건설 구조물을 떠받치는 보	<도급인> 시행령 제4조 제3호, 제5호, 제7호, 제9호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수급인> 시행령 제4조 제1호, 제3호, 제5호, 제7호,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PC거더가 넘어지지 않도록 전도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았고, 중량물 취급시의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음
21	와이엠티(주)	'22.4.22.	인천 남동구	사망 1명	2층 자재 반입·반출고에서 동박을 운반하는 작업 중에 중심을 잃고 1층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함 * 동박: 두께가 얇은 구리 박	시행령 제4조 제3호, 제8호	중량물 취급에 따른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음. 또한 안전모 및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지 않았고,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지 않음
22	(주)엠텍	'22.7.14.	경남 양산시	사망 1명	다이캐스팅 기계의 내부 금형 청소 작업 중 금형 사이에 끼여서 사망함 * 다이캐스팅 기계: 금속을 액체상태로 녹이고 정밀한 금형에 주입하여 제품을 만드는 기계	시행령 제4조 제3호, 제5호, 제8호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2호	다이캐스팅 기계의 방호장치가 파손되었음에도 해당 방호장치를 정비하지 않았고, 다이캐스팅 기계의 금형 청소 작업 시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지 않음